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4-162
----------	--------

제출년월일 : 2024. 1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조례 제정을 통해 저출생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결혼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2조)
- 나. 결혼친화환경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조)
- 다.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및 업무의 위탁(안 제4조~제5조)
- 라.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안 제6조)
- 마. 홍보 및 표창(안 제7조~제8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4. 10. 4. ~ 10. 24.(제출된 의견 없음)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개선권고(미반영)

- 지원기준을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조문으로 개선하고, 지원 후 재정누수 등이 없도록 관리·감독 장치 마련 권고 : 「결혼친화」 관련 조례를 둔 14개의 지자체 중 13개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중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명시하거나 지원 후 관리 감독 장치를 마련한 사례 없음. 또한 7개 지자체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등의 조문이 있으나, 이는 생략해도 당연 적용되는 항목임.

4)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의견(일부반영)

해당 내용(원안)	수정 의결 사항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 친화적 <u>환경을 조성하고 결혼 장려 지원에</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 친화적 <u>환경 조성에</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 ‘결혼 장려’는 개인의 선택을 압박하고 결혼 자체를 사회적 의무로 인식하게 할 수 있으므로 ‘결혼 준비’로 수정을 제안함 : 결혼이 아닌 다양한 삶의 방식을 선택한 구민들에게 부담과 압박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결혼을 선택한 구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의미로 개선안에 동의하되, ‘준비’로의 수정은 제4호(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내용의 일부만이 포함되므로 포괄적으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으로 절충하여 개선함.

5) 기타 부서의견 : 반영

해당 내용(원안)	수정 의결 사항
제1조(목적) ~ 결혼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u>마포구민 및 마포구 지역사회</u> 의 건강한 <u>결혼</u> 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결혼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u>마포구 지역사회의</u> 건강한 <u>가족</u> 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의 ~	제5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의 ~

-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면서 제1조 목적 조항이 수정됨에 따라 문맥의 조화를 위해 전반적으로 해당 조문을 재검토하여 ‘마포구민 및 마포구 지역사회’에서 ‘마포구 지역사회’에는 ‘마포구민’ 역시 포함되어 있으므로 ‘마포구민’을 삭제하여 중복을 피하고, ‘건강한 결혼’을 ‘건강한 가족’으로 수정하여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의 궁극적 목적을 드러내 주기로 함

- 제5조(업무의 위탁) 제4조에 따른 결혼친화환경 조성 사업~으로 수정

6) 제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수정의결(2024. 11.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마포구 지역사회의 건강한 가족 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3.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4.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①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미혼남녀 만남 지원: 행사 개최, 행사 참여자에 대한 식사·교통 편의·홍보물품 제공 등)

2. 결혼 및 결혼 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3. 부양·자녀 양육·가사노동 등을 함께하는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4. 합리적인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관련 사업

5.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관·기업·단체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내 기관·기업·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제1항의 관내 기관·기업·단체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관련 정보 등을 대중매체와 구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제4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제5조(업무의 위탁),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7조(홍보)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 복지동행국 가족행복지원과 김강은 (☎ 3153-8926)